

제26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2019. 6. 17.(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 시 · 교 통 위 원 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년 6월 17일
전문위원 이 광 희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19 - 27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 출 일: 2019년 6월 3일
- 라.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2.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2016. 1. 6. 시행)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2017. 7. 13. 시행)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위임조항 신설 등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옥외광고물 관련 상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과 내용 변경(안 제1조)
- 나. 심의위원회 명칭 및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높이 변경(안 제2조)
- 다. 주민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규정 변경(안 제8조제2항제2호~제3호)
- 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연임 규정 삭제 및 추가 조문 반영(안 제12조)
- 마. 전자게시대 표출 관리 기준 신설(안 제18조의3)

- 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제(안 제21조, 별지 제10호)
- 사. 과태료 면제사유 규정 삭제(안 제22조제7항, 별지 제13호)
- 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안 제3조, 제8조~제11조, 제12조의2~제14조, 제18조제1항, 제19조, 제22조~제24조, 제26조제2항, 별지 제1호~제15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2019. 4. 24. ~ 2019. 5. 1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과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서울시 도시빛정책과-13962, 2016.11.9.)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근거법령 명칭 변경.

1. 조례의 명칭 변경(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근거 법령 명칭(안 제1조, 제10조제2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안 제2조제1항6호, 제12조)

- 「옥외광고물법」 제7조 “시·군·자치구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규정에 따라 변경

2. 가로형 간판, 가로형 광고물·세로형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안 제5조제1항1호,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 분류에 정의와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함

3. 광고산업 → 옥외광고산업, 광고업자 → 옥외광고사업자(안 제10조제2항)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안 제22조 조명·제1항·제4항, 제23조 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3호)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3호 옥외광고사업 정의에 따라 변경

4. 옥외광고정비기금 → 옥외광고발전기금(안 제26조제2항)

- 「옥외광고물법」 제6조의2에 따라 기금의 명칭변경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변경 및 조항 삭제.

1. **현행 네온류·전광류에 디지털광고물을 추가, 옥외광고 심의 대상에 디지털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아목)
 -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디지털광고물의 용어 정의 신설,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3조에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에 디지털광고물을 신설함
2.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기준 및 수수료 신설**(안 제18조의3, 별표3)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전자게시대 설치기준 신설(2016.7.6),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3항제4호에 전자게시대 설치·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2017.7.13.신설)
3.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삭제**(안 제21조)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제11조제4항~제6항이 삭제됨
4. **교육대상자 확대**(안 제22조제4항)
 - 「옥외광고물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현행 교육 대상에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함.
5. **교육불참자 과태료 면제규정 삭제**(안 제22조제7항)
 -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2항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만 있으며, 면제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도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
6. **블링핀 모형 높이 4미터 → 3.5미터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5조제11호는 블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에 대하여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고,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8조제4항제2호는 블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의 높이를 3.5미터로 규정하고 있음

7. 주민협의회 운영 관련 조항 전면개정(안 제8조제2항제2호~제3호)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은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
- 주민협의회 구성: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
 -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안 제8조제2항제2호가목~다목)
 -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해당 지역의 구의회 의원
-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자율관리협정 체결자¹⁾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임

8.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규정 삭제 및 신설(안 제12조)

- 상위 법령에 연임 제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법제처의 의견²⁾에 따라 연임제한 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자인·조명·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 확대(안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규정 신설(안 제12조제2항)
-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하는 규정 신설(안 제12조제3항)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참조(페이지 8쪽)

2) 「법제처」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에 관한 해석 의견(2017. 3. 22.)

- 법령에서 위원회 위원 등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령에서 민간 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다면 연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종합 의견

-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내용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 26일에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치가 상당히 늦었으므로 향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옥외광고사업자 및 제9조제2항·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다른 시·군·자치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자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의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른다.

④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불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최대 3.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영 제15조제6호나목의3)·다목·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합계 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면적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 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 40제곱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안에는 하나에 한한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 2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광고에 한하며,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간판 1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은 0.3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표시위치·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한다)
 -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 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 나.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 다.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곳

2.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시신청이 게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②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의 수는 3명 내지 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심의대상·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